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88

발의연월일: 2021. 7. 7.

발 의 자 : 홍성국 • 이개호 • 김경만

한준호 • 이병훈 • 강선우

이원욱ㆍ허 영ㆍ노웅래

민병덕 · 김성주 · 정필모

양기대 · 홍익표 · 임호선

유건영 • 이장섭 • 전용기

민형배 • 문정복 • 서영석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용카드업자는 연간 매출 규모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 맹점에 대하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고, 현행 감독규정상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신용카드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그런데 감독규정상 공공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는 특수가맹점은 그 지정 대상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지정 기 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공공성에 대한 판단이 신용카 드업자와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열거하여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를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으로 하고, 같은 항에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 2.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지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
 -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 매업을 하는 주유소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
 - 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 마.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 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아.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
별금지 등) ①·② (생 략)	별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	③
드업자는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	<u>나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u> -
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	
<u>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u>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	
다.	
<u><신 설></u>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
	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
	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u><신 설></u>	2.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
	으로서 공공성을 지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신용카드가맹점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
	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

유소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 리 및 사업법」 제2조제4 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자
- 라. 「한국전력공사법」에 따 른 한국전력공사
- <u>마. 「도시가스사업법」 제2</u> <u>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u> 사업자
- <u>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u> 른 한국도로공사
- 사. 「초·중등교육법」 제2 조에 따른 학교
- <u>아. 「국민건강보험법」 제42</u> 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 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 드가맹점
-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